

(주)아모레퍼시픽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의 순으로 하며, 동급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 다만, 선임된 날짜가 같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의2 (사외이사의 임기)

사외이사의 총 재임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36조 단서에 의한 임기 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종류와 참석)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연간 과반이상 참석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주식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의 보수
-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대표이사 업무규정 개폐
-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6) 경영진에 관한 규정 개폐
-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 (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준비금의 자본전입
- (3) 전환사채의 발행
-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5)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6) 자기자본 2.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 (7) 자기자본 2.5% 이상의 자금대여, 신규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
- (8) 자기자본 5% 이상의 차입계약 체결
- (9) 자기자본 5% 이상의 시설투자 및 증설, 공장신설
- (10) 자산총액 2.5% 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기 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른 대표이사(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4. 이사회 연간 활동내역 및 이사회 운영평가 사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경영진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는 경영진 중 회장을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나머지 업무담당 임원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 ② 이사회는 업무담당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이사회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사무 전반을 담당 처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제5조의2(사외이사의 임기)는 이사회 규정 개정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이 사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